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
----------	---

2022. 7.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8. 강남구청장

나. 상정의결

-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2. 7. 25.)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명칭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 명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 를 “제21조에서 위임된” 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제9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으로 변경(안 제9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03.18. ~ 2022.04.0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에 따라 강남구재해대책본부장(이하 ‘재해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차 피해에 의한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참고자료-1)

○ 이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는 바<sup>1)</sup>, 만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가 결정되면 재해대책본부 산하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참고자료-2)

---

1) 위험도 평가단원자격(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재해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 평가결과를 ‘① 위험 표지 ② 사용제한 표지 ③ 사용가능 표지’ 로 구분하여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 등에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음.  
(참고자료-3)
- 법은 위험도 평가단의 위험평가 대상에 있어서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상 명시된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바, 현행 조례는 인용 법률제명을 개정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이라고 하겠음.(참고자료-4)
-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법 제명에 있어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이외에 대중교통차량이 추가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서 다중이용시설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성이 적었으며, 법 제명이 상대적으로 길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접근성이 낮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이에 법 제명을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간결히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2015.11.30.)을 거쳐 공포(2015.12.22.)·시행되었음(2016.12.22.).
-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참고자료

### 1. 관련 법

**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강남구 위험도평가단 명부(2022. 3월 기준)

연번	분야	성명	소속	기술자격 (전공)
1	안전	정제호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2	건축	강*훈	(주)건축사사무소 대흥스페이스 대표이사	건축사
3	건축	권*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건축 구조)
4	건축	김*호	건축사사무소델타그룹 대표이사	건축시공 기술사
5	건축	박*윤	수원과학대학 건축과 부교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6	건축	서*만	서종글로벌(주) 대표이사	건축시공 기술사
7	건축	이*영	(주)오피스.필 구조기술사 대표이사	건축구조 기술사
8	건축	최*규	선영구조기술사건축사 사무소대표	건축구조 기술사
9	건축	황*선	윤구조기술사사무소 소장	건축구조 기술사
10	건축	임*규	현대주이엔씨 대표 서일대 건축과 겸임교수	건축구조 기술사
11	건축	김*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건축공학 (구조물 해체 및 자원순환)
12	토목	백*종	(주)다솔건설턴트 대표이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13	토목	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학박사 (토목 및 건축시공)
14	토목	신*달	성목안전기술원(주)	토목시공 기술사
15	통신	김*	한신콘설턴트(주) 부사장	정보통신 기술사
16	소방	박*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	소방 기술사
17	소방	최*림	현대공영 전무이사	소방 설비 기술사
18	가스	이*수	한국가스협회 회장	공학박사 가스기술사
19	안전	이*찬	유엔아이안전지도사 대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토목시공 기술사 건설안전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20	안전	조*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공학 수하물처리시설분야 수석감리사



#### 4.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	---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재난안전과

## 1.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명칭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 명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를 “제21조에서 위임된”으로 변경  
(안 제1조)
- 나. 제9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으로 변경(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03.18. ~ 2022.04.0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를 “제21조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  
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략)</p> <p>② 강남구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조(목적) ----- ----- ----- ----- ----- 제21 조에서 위임된 ----- ----- -----.</p> <p>제9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실내공 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 4. 작성자

- 재난안전과 직급 행정9급 성명 이지현 (02-3423-6942)